군산시 고시 제 2019-83호

군산시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기준 고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5,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46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에 대한 입지에 필요한 기준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군산시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기준 고시를 공포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제1조(목적) 군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 등 구체적인 인·허가 업무처리기준(입지제한)을 제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서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등을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유해성기준을 고시한 재활용제품 또는 재활용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제2호에서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승인 대상. 단,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대상 시설로 제한함.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6] 4호, 10호에서 12호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제3조(제한지역) 군산시 전 지역을 적용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한기간) 이 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폐지 고시할 때까지 적용한다.

제5조(제한방법) 사업예정지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진·출입로)사항,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생활의 편익과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제한한다.

1. 사업예정지 주변의 여건
 가. 사업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는 주택, 상가, 과수원, 동·식물관련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식품관련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
 나. 마을과 근접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주변 환경 대기, 수질, 소음, 악취, 토양 등으로 주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거나 환경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업 등이 입지할 수 없다.
2. 도로교통 사항
 가. 「도로법」 상 도로가 아닌 진입로의 경우 폭4m이상의 포장도로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위 가호의 진입로의 경우 도로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20m이내에 주택, 상가, 동·식물관련시설, 과수원, 교육시설, 종교시설, 식품관련시설 등 없어야 한다.
 다. 사도일 경우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생활편익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폐기물처리를 위한 모든 공정은 밀폐형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업 등의 입지로 인하여 마을의 고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생활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 사업예정지 경계선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10km 밖에 위치한 지역이어야 한다.
 라. 사업예정지로부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이 10km이내에 없어야 한다.

제6조(입지제한 기준 적용 예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허가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등을 허가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하려는 자
2. 군산시 공익을 위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6] 4호, 10호에서 12호에 한해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직선거리 500m이내 거주세대의 동의를 얻어 주민생활 편익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한 자
4. 영업대상폐기물(중분류 기준) 종류의 변경 없이 처리용량 및 처리대상 폐기물 등이 증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기존 폐기물처리업자 (단,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7조(기타 사항)

1. 공익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우리 시의 폐기물발생량 및 처리능력에 따라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처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신청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인·허가에 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9-8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100호(2018.07.13.)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27 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사업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사업
   나. 명 칭 : 성산 봉안시설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시설명	위 치	시설결정		실시계획		비 고
		면적(㎡)	최초결정일	당초 면적(㎡)	변경 면적(㎡)	
성산 봉안시설	성산면 대명리 165-27번지 일원	38,997㎡	군산시 고시 제2017-130호 (2017.10.27.)	38,997㎡	39,030.6 (증33.6㎡)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가. 변경내용 :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및 단지내 구조물 변경 (보강토옹벽 높이 변경, L형측구 삭제)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번지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재단법인 성산공원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8. 07. 13. ~ 2020.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가. 변경 : 토지확보(재단법인성산공원 변경)

7. 관계도서(변경) : 게재 생략

■ 토지조서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내용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	164-5	답	2,678	2,678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2	164-6	임	526	526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3	164-7	전	655	655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4	165-5	전	564	564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5	165-6	대	2,258	2,258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21					
	6	165-16	전	698	698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7	165-17	전	1,100	1,100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8	165-21	대	1,028	1,028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9	165-22	전	1,562	1,562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10	165-25	전	225	225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11	165-26	전	207	207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12	165-27	임	13,226	13,226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21					
	13	165-28	도	107	107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14	165-31	도	81	81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15	산98-2	임	9,223	9,223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16	산105-1	임	4,760	4,760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17	산106	임	99	99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					
	계	17필지		38,997 (39,030.6)	38,997 (39,030.6)							(확정 측량)

■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실제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성산면 대명리	산105-1	임	소나무		37주							
				갈참나무		13주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21	4250/4760				
				밤나무		48주	김지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16	34/4760				
				아까시아		8주	김병호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3398	476/4760				
				오리나무		8주							

군산시 공고 제2019-1525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9.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9. 8. 9.

2.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 · 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조	군산시장의인 중앙동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2019. 8.	통합발급기 추가 설치	중앙동
	군산시중앙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2019. 8.		

군산시 공고 제2019-1535호

2019/2020년도 어업면허[한정] 처분 공고

2019/2020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 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한정)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8. 13.

군 산 시 장

○ 어업면허 처분 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면허 처분일	어장위치	비고
제5751호	패류 양식어업	20	방축도 어촌계장	2019.08.13. ~ 2024.08.12.	2019. 08.13.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인근 해역	한정